

[붙임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1)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 2)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 시에도 최대 160시간까지 인정
- 3) 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행정지원과)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교육명령)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4) 봉사활동 실적은 기관주관 활동만 인정(개인활동 제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 중앙부처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수료증, 수료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교육)	1월미만	교육시간	50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 주관 교육	직장교육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100	부서에서 등록 후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등록)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1.5	30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활동평가시간	50	주관부서에서 등록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부서에서 등록 후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승인 (학습관리시스템에 결과 보고서, 출석부, 출장보 고서 등 첨부 등록)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10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방문 (올림픽, 엑스포 등)	방문시간	30	
강의(출강)	강의	강의시간× 2	50	부서에서 등록 후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승인 (추진계획, 근무일지 첨 부 등록)	
재난·재해 대응 및 봉사활동	근무활동기간 (월단위)	참가시간	30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직무 관련 개인 학습	사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어학 등	교육시간	30	개인별 등록 (수료증 사본 등 첨부 등록)
	대학·대학원(자비포함) (야간,사이버, 방송통신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개인별 등록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첨부 등록)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 만 인정)	기술사	30시간	30	개인별 등록 (자격증사본 첨부 등록) ※ 강북구 인사규칙 [별표22]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	25시간	25	
		기사	20시간	20	
		산업기사	15시간	15	
		기타	15시간	15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2	30	주관기관에서 등록 (결과보고서, 출석부 첨부 등록)
		토론	토론시간× 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page 이상, 별표5 활용)	20	개인별 등록 (독서감상문 첨부 등록)
직무관련 저술	개인	50시간	50	개인별 등록 (증빙자료 첨부 등록)	
	공동	25시간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논문 등	일반논문(개인)	25시간	50	개인별 등록 (관련 증빙 자료 첨부 등록)
		일반논문(공동)	15시간	50	
		석사학위(개인)	50시간	50	
		박사학위(개인)	75시간	75	
		칼럼 등(개인)	10시간	50	
		칼럼 등(공동)	5시간	50	

< 비 고 >

가. 1년이상 국내의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4. 4. 1~2016. 3. 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5. 4. 1~2016. 5. 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야간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5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이버 교육의 경우 개인학습
으로만 인정